

부산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0031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003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단222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부산광역시 중구

변론종결 2018. 9. 5.

판결 선고 2018. 10. 1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단222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중구 C 대 87.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방법초소 16.6㎡를 철거하고, 위 토지 16.6㎡를 인도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장성훈

판사김문성

판사손주희

별지